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2011.12.21)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(1 개월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 또한 자본시장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에 의거 동 소규모 펀드 해지를 결정한 바, 2011.12.20 일에 결산처리되어, 당일인 2011.12.21 일에 상환금이 지급됩니다.

- 아 래 -

1. 공시사유 발생일: 2011 년 12 월 20 일

2. 공시사항:

가.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.

나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펀드

(단위:원)

펀드명	협회표준코드	원본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A	KR5370926895	166,430,718	166,430,718	1000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1	KR5370926903	15,357,381	15,357,381	1000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I	KR5370926911	125,884,278	125,884,278	1000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2	KR5370938494	77,775,994	77,775,994	1000
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3	KR5370938502	28,585,388	28,585,388	1000

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(주)
대표이사 이석재